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2025. 2. 26.(수)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9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2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6.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20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3일
-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0.)

2. 제안사유

-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치매안심 센터 설치’를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935,087명으로 매년 약 5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8년간 전체 치매상병자¹⁾수는 2015년 518,500명에서 2022년 1,000,07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치매상병자의 총 진료비는 약

1) 치매상병코드(6개: F00~F03, G30, G31)를 주상병으로 받고, 입원 또는 외래 또는 약국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사망자 제외)

2조 8천억 원으로 1명당 진료비는 약 280만원,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220만원으로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0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의 급증에 따라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 2017년에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 완화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에는 ‘치매안심병원²⁾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2024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달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 참고자료

○ 2023년 기준 대구시 치매 현황

대구시 치매환자 유병률은 60세 이상은 7.16%, 65세 이상은 10.09%

단위: 명, %

구 분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환자수	유병률	노인인구	치매환자수	유병률
대구시	657,935	47,132	7.16	455,069	45,912	10.09
중구	22,200	1,880	8.47	16,526	1,846	11.17
동구	104,584	7,771	7.43	74,884	7,597	10.14
서구	59,771	4,145	6.93	41,815	4,037	9.65
남구	48,727	4,023	8.26	35,974	3,948	10.98
북구	106,978	7,331	6.85	71,956	7,117	9.89
수성구	104,571	7,956	7.61	73,357	7,770	10.59
달서구	138,417	8,901	6.43	91,310	8,619	9.44
달성군	59,388	3,814	6.42	39,069	3,689	9.44
군위군	13,301	1,311	9.86	10,179	1,290	12.68

자료원 : 공공데이터포털(보건복지부_시군구별 치매현황(2015년~2023년))

주1.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수 : 소수점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달성군 등록 치매환자

2020년 1,538명 → 2024년 2,449명으로 911명 증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전국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33	10.33	10.33	10.41	-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840,191	886,173	935,086	1,010,400	-
달성군 65세 이상 인구수**	33,089	35,530	37,737	40,217	42,318
달성군 등록 치매환자 수	1,538	1,618	1,565	1,827	2,449

자료원 :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국가통계포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2024.10.31.

주1 : 등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를 말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21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1.)

2. 제안사유

-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게임 이용자는 약 33.4억 명으로 이스포츠는 세계적인 대중 여가로 성장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게임 이용률은 전국민의 62.9%³⁾로 대표 여가 생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이스포츠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2016년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 2019년부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게이미용자 실태조사(10~64세 1,000명 대상 조사)

부산, 광주, 대전, 경남 진주에서 개관하였으며 2026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 유치 등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학교 등과 연계한 이스포츠 해설가 양성 과정 교육, 이스포츠 데이터·마케팅 전문 과정 신설과 게임사와 MOU 협약을 통한 이스포츠 대회 개최,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이스포츠를 소재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달성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조례안의 상위 법률의 제명에도 이스포츠 뒤에 괄호 표시해서 전자 스포츠라고 기재하고 있고 유사한 타 지자체 조례안도 대부분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므로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이유

상위 법률과의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상위 법률의 제명에 따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 조례안 등과 비교하였을 때 제명을 수정하고자 함

○ 수정안 대비표

기 존 안	수 정 안
- 조례안의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의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 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22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0.)

2. 제안사유

- 공사장 인근 낙하물 사고 등 꾸준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최근 건설공사 시 낙하물 사고, 공사 차량과 건설 자재의 인·도로 점령, 보행자 안전통로 미설치 등으로 공사장 인근 주정차 차량의 파손과 보행자와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 21.08.25.)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아파트 공사로 사고위험 지역 전락
 - (영남일보, 23.01.20.) 대구 공사장서 떨어진 시멘트로 차량 여러대 파손...“안전 조치 마련 절실”
 - (연합뉴스, 24.06.14.)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50대 근로자 사망

- (경상매일신문, 24.07.11.) 구미 초등생 등교길 교통사고... “스쿨존 안전불감증 여전” (불법주정차 공사차량)
 - (영남일보, 24.9.13.) “아이가 맞았다면 아찔”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틀 연속 낙하물 사고 발생
 - (인천일보, 24.12.06.) 용인 고등학교 공사장에서 외벽 비계 무너져... 6명 부상
-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보행취약계층이 많은 ‘교육환경 보호구역⁴⁾’ 및 ‘다세대 공동주택’ 인근 공사장 등에 대하여 추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23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1)

2. 제안사유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인식 개선과 안전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불법 소각·처리를 최소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 달성군의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줄기·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합니다. 2023년 12월 농촌진흥청-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협업방안을 발표하고, 동절기 산불위험요인 중 하나로 과수 관련 영농부산물을 규정하여 부처 간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1. 산림연접지 100m 이내인 취약지역, 2. 고령층, 취약층의 농경지인 관리지역, 3. 이외 농경지인 일반지역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대구시의 경우 군위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 시비 1억 5백만 원 지원.

- 해당 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논·밭두렁 태우기 무효성 등 인식개선 교육’, 농기계 무상임대사업의 파쇄기 지원, 수거·파쇄 후 퇴비화를 통한 자연순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달성군의 경우 과수가 관내에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연접 재배지가 적어 사업대상지 선정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참외·토마토 등 시설작물이 많은 하빈·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파쇄기 관련 임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65회 파쇄기 임대로 영농인은 1회 임차 시 인근 농가도 함께 활용 후 반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영농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으로 영농인의 인식개선과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예방 등 군민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참고자료

○ 관내 주요 농산물 현황

- 농가 5,993가구, 농업인구 14,343명
- 경지면적 : 전 2,183ha, 답 5,036ha, 과수원 64ha→ 총 7,283ha

주요 농산물 현황

품목	농가수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쌀	2,941	2,746	13,547
마늘	553	280	3,606
양파	272	175	11,067
참외	269	198	7,997
수박	111	176	9,111
토마토	114	58	2,632

○ 파쇄기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

영농부산물 파쇄기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23~'24)

기종	보유 수(대)	2023년	2024년
덩굴파쇄기(줄기 절단)	4(농업기술센터 3, 하빈 1)	98건	96건
잔가지파쇄기 (잔가지, 고춧대, 뿌리 등)	7(농업기술센터 2, 현풍 2, 하빈 3)	166건	161건
목재파쇄기	1(농업기술센터 1)	3건	5건
계		267건	262건
연평균 실적			265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24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1)

2. 제안사유

- 임산부 탑승 차량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 및 주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가정의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년 1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배려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임산부를 고려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구시는 2020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⁵⁾하였으나 군민이

5) 제5조의3(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100분의 1이상

체감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2015년 기준 달성군 관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이 25면에 불과한 점과 최근 10년간 기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시설의 현황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하여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31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2.24.)

2. 제안사유

- 달성군 내 유휴공간인 (구)다사치안센터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에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
 - 법 인 명 : (재)달성문화재단
 - 사용기간 : 2025. 2. ~ 2026. 2.(기간만료 후 재심의)
 - 위탁시설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소재지	구분	면적(m ²)		
다사읍 매곡리	719-19	토지(대지)	295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다사·하빈권역)
		건물	202.5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희공간인 (구)다사치안센터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위탁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권역 거점 공간 확보로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